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정 보 위 원 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테러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24호)

2024. 11.

정 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 · 김예지 · 이현승 · 인요한 · 조승환 · 김기웅
이상휘 · 우재준 · 박형수 · 윤한홍 · 김상훈 의원(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30.
3. 회부연월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테러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자확보, 대테러 장비의 운용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현행법 제3조제1항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3조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러한 책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8조제1항²⁾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8조제2항은 관계기관 중 국가기관 외의 기관의 장이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생략) <u><신설></u>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는 관계기관 중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령에 따라 테러 예방·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공업용수도사업·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³⁾ 등이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며, 현행법령에 따른 테러 예방·대응 전담조직 현황⁴⁾은 다음과 같음.

<테러 예방·대응 전담조직 현황>

조직명	주요 업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 시·도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에 관한 협의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 공항·항만 내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
테러사건대책본부	○ 외교부장관(국외), 국방부장관(군사시설), 국토부장관(항공), 경찰청장(국내일반), 해양경찰청(해양)이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설치·운영
현장지휘본부	○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 대응활동 총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조직명	주요 업무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질병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발생시 대책본부 지원 - 군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13개) 존재
테러복구지원본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구급·수습·복구 활동 등에 관해 대책본부 지원
대테러특공대	○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 특공대를 설치·운영하여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등 임무 수행 (경찰청 산하 18개, 해양경찰청 산하 5개, 국방부 산하 2개) -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20개,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13개
테러대응구조대	○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소방본부에 설치·운영(소방청 산하 27개 구조대)
테러정보통합센터	○ 국정원장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
대테러합동조사팀	○ 국정원장은 국내외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첩보 입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 예방조치, 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운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예산정책처(2024) 및 국가정보원 제출자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3조제4항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테러 예방·대응에 필요한 제도·여건의 조성 및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훈시적 규정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대응 관련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8조제2항의 경우 국가기관 외의 관계기관, 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전담조직 운영에 대하여 국고보조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테러 예방·대응 전담조직의 설치를 장려하고 실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국가정보원은 전담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전담기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바, 지원 대상 전담기관 및 재정지원 규모 예측이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전담기관 실태 및 운영비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⁵⁾.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대테러 전담조직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사무·사업 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담조직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유형·운영 현황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대테러센터 등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는 이미 구축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 이외의 대테러조직은 해당기관 자부담을 통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

5) 가령, 관계기관이 설치한 전담기관의 한 예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테러대응팀은 총 40명으로 구성되고 2024년도 운영 예산은 7억원에 달함(국회예산정책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4.10.).

하는 것이 지역 등 현장에서의 효과적 대응을 담보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은 국제행사 등 지역 단위에서의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⁶⁾.

국가정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 예산지원을 의무화하여 관계기관의 대테러 분야 예산 확보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기관들이 전담조직 운영을 위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 예산 확보로 대테러 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⁷⁾.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유형과 양상의 변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대테러활동 여건 조성이 긴요하며, 다만 재정 지원 주체에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⁸⁾.

문 의 처
02) 6788-5614

6) 기획재정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2024.

7) 국가정보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정원 의견」, 2024.9.

8) 대테러센터,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2024.9.